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6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120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고지처분의 무효 확인
원 고	1. A
	2. B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5. 1. 9.
판 결 선 고	2025. 2. 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6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A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출자지분 60%(102,000주), 원고 B은 출자지분 40%(68,000주)를 각 소유하였다.

나. 1) 이 사건 법인은 2013. 4. 11. 2012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369,900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3. 6. 1. 이 사건 법인에게 가산세 3,550원, 가산금 11,200원을 더하여 합계 384,650원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법인은 2011. 2. 17. ○○시 D건물 E호(이하 '감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구 ○○도 도세 감면조례(2011. 12. 26. ○○도 조례 제42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4. 2. 27. 감면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2. 11. 이 사건 법인에게 구 ○○도 도세 감면조례 제7조 제2항[1]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54,700,210원, 농어촌특별세 1,367,490원, 지방교육세 7,562,240원 합계 63,629,9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3) 위와 같이 부과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및 취득세와 관련하여 2015. 8. 12. 현재 이 사건 법인[2]이 체납한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과세연도	기분	세 목	과세번호	계	본 세	가산금	납기
체납내역	2013	6월 수시	지방소득세	F	492,170	373,450	118,720	2013. 6.30
	2014	12월 수시	취득세	G	69,356,520	63,629,940	5,726,580	2014. 12.31
	합 계				69,848,690	64,003,390	5,845,300	

1) 2011. 12. 26. ○○도조례 제4295호로 전부개정된 ○○도 도세 감면조례 부칙 제3조 제2항 참조
2) 2013. 5. 31. 폐업하였다(을 제1호증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6

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5. 8. 12. 구 지방세기본법 제45조,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2013년 체납 지방소득세 및 2014년 체납 취득세 합계 69,848,690원[= 지방세 64,003,390원(2013년 지방소득세 373,450원 + 2014년 취득세 63,629,940원) + 가산금 5,845,300원(2013년 지방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118,720원 + 2014년 취득세에 대한 가산금 5,726,580원)] 중 각 출자지분 소유비율에 따라, 원고 A에게 41,909,210원(60%), 원고 B에게 27,939,480원(40%)의 각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새로운 부과처분이자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도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4.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6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이나 이를 통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의 도입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막기 위한 통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국세에 관한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구 지방세기본법은 제116조에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제1호), 과세예고통지(제2호),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제3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항]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과세예고통지'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달리 과세예고통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이후 구 지방세기본법 제116조 제1항 제2호가 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받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6

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2015. 12. 31.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은 제94조 제2항에서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란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통지',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통지'라고 규정하여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또는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조사 등에 따라 지방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세기본법이 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면서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나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제88조 제1항)이 신설되었다. 이후 2020. 12. 29.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은 위 각 경우 외에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는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의무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과세예고통지 관련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의 변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중이던 구 지방세기본법은 '과세예고통지'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하고 있었을 뿐, 달리 과세예고통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구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이 사건 처분을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 전 피고가 원고들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6

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판사 박○○

판사 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6

별지1

목 록

순번	전자납부번호	처분일자	귀속년월	세목	지정금액(원)
1		2015-08-12	201306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95,300
2		2015-08-12	201306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96,870
3		2015-08-12	201412	취득세(부동산)	41,613,910
4		2015-08-12	201412	취득세(부동산)	27,742,610
	총 4건 합계 69,848,690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6

별지2

관계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과세예고통지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 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어 2016. 12. 27.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어 2020. 12. 29.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다만, 제150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6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1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어 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다만,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1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3.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5.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② 법 제1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6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22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법 제45조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2.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세목·세액·산출근거 및 납부기한
3. 제2호의 금액 중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
4.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적용한 규정

제94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② 법 제1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 12. 31.>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통지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통지

■ 구 ○○도 도세 감면조례(2011. 12. 26. ○○도조례 제42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011. 12. 26. ○○도조례 제4295호로 전부개정된 ○○도 도세 감면조례 부칙]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